

## 이스탄불 강령문서

[이스탄불 2003년 10월 29일]

### \* 기획의 기원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하여 국제민중법정을 조직하려는 생각이, 대체로 때를 같이하여 세계 곳곳으로부터 일어났다. 그것은 2003년에 개최된 베를린 자카르타, 제네바, 파리 그리고 칸쿤에 이르는 반전회의에서 논의되고 원칙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카르타 평화합의"(Jakarta Peace Consensus)는 2003년 5월 25일, 국제전쟁범죄 민중법정의 실현에 매진한다고 선언하였다. 2003년 6월 26~27일 브뤼셀 버트런트 러셀 평화재단에 의해 조직된 네트워크 회의(European Network for Peace and Human Rights)에서도 이 제안이 논의되어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

브뤼셀의 워킹(Working)그룹 회합에서, 이라크 민중과 인류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를 조사하고 확증하는 국제민중법정을 개최하자는 구상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법정은 이 전쟁의 다른 측면 및 그 배후에 있는 전략에 다양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의 공청회로 구성되었다. 터키의 법정그룹이 사무국 및 정보정리의 역할을 맡고, 브뤼셀, 히로시마, 뉴욕, 런던 그 밖의 도시의 그룹도 밀접한 연대를 하게 되었다. 이 국제조정위원회가 2003년 10월 27~29일,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본 계획의 개념, 형태, 목적을 결정하였다.

### \* 본 계획의 정당성

침략전쟁이 세계의 민중과 정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의 행위를 다루는 법정 혹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기관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도덕과 인권에 기반한 권위가 세계를 대변할 수 있다.

우리들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반한다.

-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범하고, 세계평화의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자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국제기관이 없다는 점.
- 침략전쟁에 반대를 표명한 지구규모의 반전행동의 일부라는 점.

- 이라크 민중이 점령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
- 침략전쟁, 전쟁범죄, 인권에 대한 범죄, 그 밖의 국제법 위반해 대해 행동을 벌이는 것은 모든 양심적인 민중의 책임이라는 점.
- 평화적 공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의 침략과 UN 헌장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과거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
- 이 전쟁의 소리 없는 희생자에게 목소리를 주고, 전 세계의 사회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운동에 의해 표현된 시민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
- 국제법의 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내걸려는 의지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당성은 이 문서에 서술된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획득될 것이다.

## \* 민중법정의 임무

첫 번째 임무는 미국정부가 이라크전쟁의 개전에서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전쟁 및 그 명확한 국제법 위반을 비난하는 세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그 계획적 전쟁전략을 세계에 강요하고, 심지어 미국정부는 면죄를 요구하고, 자신들 모든 국제법, 조약의 상위에 두고 있다.

두 번째 임무는 침략 중 전쟁범죄, 점령법, 인권법에 어긋나는 범죄, 제노사이드를 포함한 인권법에 반하는 죄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조사는 이라크에 부과된 경제제재와 수세대의 생명을 앗아가는 열화우라늄 같은 불법무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 임무는 "새로운 제국세계질서"를 조사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민중법정은, 따라서 '선제공격론' '예방전쟁'이라는 학설보다는 폭이 넓은 문맥과 그 학설들의 모든 귀결 -시혜적 ?권, 점령지역지배, 동시다발극장전쟁(역자 생각에 이것은 컴퓨터 게임처럼 방송에서 전쟁이 중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등- 모두를 검토한다. 이런 과정의 일부로, 몇 개의 공청회는 그 합리화된 전쟁의 논리에 포함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조사할 것이다.

본 법정은 보고와 서면 증거를 검증하고(이라크인과 국제적인 피해자 및 다양한 전문가 증인)에 귀 기울인 후, 판결에 도달할 것이다.

## \* 목적

본 국제적 민중법정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네 개의 기본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 이라크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뿐만 아니라 점령 하에서 일어난 범죄, 이 전쟁의 배후에 있는 진짜 목적과 세계평화에 대한 이 전쟁연설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 평화운동과 지구규모의 반전행동의 동원을 지속, 강화하는 것. 본 민중법정은 학문적인 정진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도록 한다. 반전평화행동은,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여 거대한 대중운동을 실현하였지만, 원칙적으로 그 침략자를 기소하고 그 민중법정 과정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다시 일으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 본 민중법정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본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들의 조사는 역사왜곡에 대해, 사실을 회복하고 집단적인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은 국제기관의 침묵으로의 도피에 대해 그들에게 국제법 하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최근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목적은 미래의 불법적인 전쟁을 막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중법정은 국제법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고, 정의의 개념과 윤리적, 정치적 자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것은 "승자의 정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고, 전쟁의 희생자에게 목소리를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점령종결과 이라크의 주권회복을 요구하는 세계여론 및 이라크 민중의 요구를 지지한다.

- 국제민중법정의 제창은 새로운 제국의 세계질서가 전쟁을 그 주요한 도구의 하나로 하는 영원한 "예외상태"로서 확립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민중법정은 평화와 정의의 세계구축에 기여하는 도의적, 정치적, 법적 판결을 가져올 것이다.

## \*민중법정의 형태

일반적인 기획으로서의 관련행사, 관련한 조사단, 조사위원회, 각국에서의 공청회와 특정문제를 다루는 독립된 세계민중법정의 개최, 그것들은 모두 이스탄불에서의 최종법정에 집약된다. 지금까지 브뤼셀과 히로시마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시점에서, 공청회 개최지와 그 밖의 제안에서는 뉴욕, 코펜하겐, 뮌헨, 멕시코가 포함된 "이라크침략과 군사점령에 대한 법적 조사"가, 또 뮌바이에서 "범죄로서의 전쟁에 관한 세계 법정"이 열렸다. 일본 각지 및 아시아 각국에서의 법정과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는 일본의 ICTI는 이라크 세계민중법정의 파트너이고, 명백한 사실과 성과의 전부를 가지고 이스탄불에서의 WTI최종법정에 기여할 것이다.

면죄에 종지부를 찍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강제력이 없다는 아이러니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어떤 사법적 야심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정치적 항의와 학문적 심포지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전에 결론...재판과의 사이에서 우리들은 그 사이를 헤쳐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역설은 우리들은 단순한 시민이고, 그런 까닭으로 엄밀하게 사법적인 방법에서 판결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시민으로서 범죄적 전쟁

정책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뜻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출발점이고 우리들의 힘이다.

조사위원회는 민중법정 전체에 적용된 ('헌장'에 명문화되었다) 포괄개념에 따라 운영되지만, 각 공청회는 형식에 관해 일정 정도 독립성도 부여된다. 이라크의 사례에 가능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의해(국제법, 지정학적, 경제적 분석 등등) 우리는 면죄를 멈추고, 제국의 전쟁에 저항하는 우리들의 공동의 목적을 강화한다. 그렇게 하여 공청회는 상호 힘을 주고 명확한 사실은 모두 이스탄불 최종법정에 가지고 나온다.

이 계획은 국가 당국 및 국내법정(보편적 사법 이론 하에 다양한 나라에서 제소된 소송 같은 국제법정(국제 사법재판소 같은)에 고발하는 노력에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한다.

## \* 시기

핵심적인 공청회는 2004년 4월 14일 브뤼셀을 시작으로 이라크전쟁 2주기가 되는 2005년 3월 20일 개정하는 이스탄불 최종법정에서 종료한다. 이것들에 선행해서 정력적인 조사, 연대, 운동이 행해질 것이다.

## \*국내외의 운동단체에 호소

우리들은 모든 조직, 개인에 이 계획의 지지를 촉구한다.

우리들은 모든 조직에 동참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레벨에서 참가를 요청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공청회나 관련행사의 조직화
2. 공청회를 주최하는 것
3. 민중법정의 다양한 구성부분에 참가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
4. 문제가 있는 범죄, 위반의 여러 측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개인, 단체의 이름과 연락처 제공
5. 특정한 보고의 준비를 맡고, 민중법정에서 사용하는 것.
6. 가능한 많은 언어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가 때늦지 않게 갱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7. 민중법정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캠페인 조직화를 맡는 것.
8. 본 민중법정실현에 관하여 지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